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427호

나. 발 의 자 : 박성연 의원 외 19명

다. 발의일자 : 2023년 1월 12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2월 9일

2. 제안이유

- 관광취약계층의 정의에 관광약자를 포함시키고, 관광 활동지원 및 관광 환경 조성 등 시책 마련 의무의 내용을 추가·보완함으로써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관광취약계층의 정의에 관광약자를 포함시킴(안 제2조제1호)

나. 기존 관광약자의 정의에서 중복되는 관광취약계층을 제외함(안 제2조제2호)

다.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진흥을 위해 필요한 관광 활동지원 및 관광 환경 조성 등 시책 마련 의무 내용을 추가·보완함(안 제3조)

라.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개정에 따라 달라진 인용 조문을 반영함(안 제4조제2항)

다. 조문별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개정안은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선언적으로 명시하여 조례제정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에게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u>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 규정함으로써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u> ---

(2) 정의규정(안 제2조)

- 개정안은 ‘관광취약계층’에 ‘관광약자’를 포함시키고 기존 ‘관광약자’의 범위에서 ‘관광취약계층’을 제외하고자 함. 이는 ‘관광취약계층’ 대상을 장애, 노령, 임신 등의 사유로 시설이용정보접근 등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	제2조(정의) ----- -----. 1. ----- ----- 한다)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과 관광약자를 --. 2. “관광약자”란 장애, 노령, 임신 등

<u>애,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 이용의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u>	<u>의 사유로 인하여 이동이나 시설이 용 및 정보접근 등에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광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u>
---	--

- 현행 조례는 ‘관광취약계층’의 개념을 관계법령인 「관광진흥법 시행령」(제41조의3) 개정(2020.9.)사항을 준용하고 있음.
- 현재 각 시도마다 ‘관광약자’와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정책용어도 상이한 바, 법령 개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법적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임.
 - 서울시는 ‘관광취약계층’의 범위를 관련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광의의 의미인 ‘관광약자’를 ‘관광취약계층’의 개념에 포함한다면 법령의 체계와 지원 범위에 혼돈이 생길 우려가 있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임.

(3)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시장은 관광활동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필요한 관광 활동 지원 및 관광 환경 조성 등 시책을 마련’하도록 구체화한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현 행	개 정 안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 ----- 관광 활동 ----- -----필요한 관광 활동 지원 및 관광 환경 조성 등 시책을 마련-----.

(4) 무장애 관광지원(안 제5조의2)

- 개정안은 무장애 관광지원 대상을 ‘관광약자’ 에서 ‘관광취약계층’ 으로 규정함. 개정안의 취지는 ‘관광취약계층’ 에 ‘관광약자’ 를 포함시켜 무장애 관광에도 이를 적용하기 위함이나, 법령에서 규정된 정의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이를 개정할 경우 관련 법령과의 용어체계의 정합성이 결여될 수 있음.
- 무장애 관광지원 대상에 포함된 ‘관광취약계층’ 으로 개정할 경우 전국 17개 시도 중 대부분의 광역시도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으로 사용되는 등 용어상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개정에 신중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임.

(5) 자구 수정 등

- 그 밖에 조문내용 중 “관광활동” 을 “관광 활동” 으로 “활동지원” 을 “활동 지원” 으로 “하는데” 를 “하는 데” 로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함.

그러나 “관광활동” 과 “활동지원” 등은 법령, 조례, 기본계획·방침서 등에서 빈번하게 통용되고 있어 개정 필요성이 적음.
- 다만 안 제4조(관광지원기본계획)의 관계 조례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제4조가 같은 조례 제6조로 개정(2019.7.)되었으나 일괄정비 되지 않은 사항과 「서울특별시 표창조례」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로 개정(2013.5.)되었으나 동 조례안 제정 당시부터 오류가 발생한 사항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임.

붙임 1

집행부 검토의견

**의안번호
0427**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박성연 의원	제안일자 2023.1.12.	소관 상임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내용	<p><제안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취약계층의 정의에 관광약자를 포함시키고, 관광 활동지원 및 관광 환경 조성 등 시책 마련 의무의 내용을 추가·보완함으로써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하고자 함. <p><주요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취약계층의 정의에 관광약자를 포함시킴(안 제2조제1호) ○ 기존 관광약자의 정의에서 중복되는 관광취약계층을 제외함(안 제2조제2호) ○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진흥을 위해 필요한 관광 활동지원 및 관광 환경 조성 등 시책 마련 의무 내용을 추가·보완함(안제3조) ○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개정에 따라 달라진 인용 조문을 반영함(안 제4조제2항)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1.12. 박성연 의원 발의 - (찬성) 박성연, 강석주, 곽향기, 김경훈,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원중, 김원태, 김춘곤, 문성호, 박영한, 송경택, 신동원,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최민규, 홍국표 의원((20명) 		
부 검토의견	<p>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p>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조례안의 관광 활동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 등 시책 마련 의무의 내용을 추가·보완함으로써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 취지에 동의함 ○ 다만, 관광취약계층의 범위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으로 그 범위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대적으로 광의의 의미인 ‘관광약자’를 ‘관광취약계층’의 개념에 포함한다면 법령의 체계와 지원 범위에 있어서 혼동이 생길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관광취약계층’과 ‘관광약자’의 정의는 현행 조례와 같이 명확하게 구분하여 운영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담당부서	관광산업과	팀장	홍승현(☎2133-2781) 담당
			김종욱(☎2133-2787)